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 번	안 호	63
--------	--------	----

제출년월일 : 1999년 4월 12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규정 (안제4조)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나. 수탁기관에 관한 규정 (안제5조, 제6조)

- 대 상 :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선정기준 :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제7조)**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공무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준칙(자치12200-121호)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 제6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99.4.8)원안의결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지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7일 이내에 강원도지사에게 재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송신부위	송신일	44.7.2
송신번호	44.7.2	44.7.2
송신인	44.7.2	44.7.2
송신처	44.7.2	44.7.2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원 도

모사전송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4-0361, 251-3320, 평강2224, 2295, 전용:0361-219-4027

자치행정과 과장 이명운 지방행정사무관 최순규 담당과 이주익

문서번호 가치 12200- /  
 시행일자 1999. 1. 2 (10년)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군수	762222	지	
검	일자		시	
	시간		결	부군수 전결
수	번호	2	재	과 장
처	리	과	공	담
담	당	지	공	담
		이	공	담
		의	공	담
		의	공	담

제목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시달

1. 자치 12200- 169('98. 6.22)호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중 '99년 부터 추진 할 2단계조직개편 추진을 본격 실행화 하기 위한 시행시침 입니다.

2. 민간위탁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조직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 하고있는 행정개혁차원에서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과제의 하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기업가적 사고와 자치경영행정을 위해 별첨의 지침에 의거 계획된 일정대로 실행조사 후 목표량을 확정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1부(MOHA방으로 송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행정부지사 임 무 통



수신처 : 디